

# 감사위원회규정

제정	2000년	4월	2일
개정	2004년	2월	25일
개정	2006년	3월	9일
개정	2010년	3월	19일

주식회사 엘지화학

## 제 1장 총 칙

### 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감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2조 (적용범위)

감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### 제3조 (직무와 권한)

- ① 감사위원회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, 이를 위하여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.
- ②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③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.
- ④ 감사위원회는 법령 및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의결한다.

## 제 2장 구 성

### 제4조 (구성)

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,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한다.

### 제5조 (임기)

- ① 감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법령, 정관에 정해진 사항이 없을 경우 당해위원의 이사 임기 만료시점까지로 한다. 다만, 그 임기가 최종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전에 만료될

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.

- ② 감사위원회 위원은 연임될 수 있다.

#### 제6조 (위원장)

- ①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을 선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.
- ② 위원장의 유고로 인해 그 직무를 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에서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### 제 3 장 회 의

#### 제7조 (회의)

감사위원회는 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#### 제8조 (소집권자)

- ① 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 위원장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6조 제2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감사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한 위원이 감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#### 제9조 (소집절차)

- ① 감사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적어도 12시간 전에 각 감사위원에 대하여 서면,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.
- ② 감사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#### 제10조 (의사의 진행 및 결의방법)

- ①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를 진행하고, 회의의 질서를 유지한다.
- ② 감사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. 통신수단에 의한 결의에 관하여는 이사회 규정 제12조 제4항을

준용한다.

- ③ 감사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#### 제11조 (부의사항)

① 감사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

- 가. 감사보고서의 작성·제출
- 나.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
- 다.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
- 라.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
2. 감사에 관한 사항

- 가. 상법 제 412조의 2 소정의 이사의 보고에 따른 조치
- 나.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따른 법률 제10조 소정의 외부감사인의 통보에 따른 조치
- 다. 감사록의 작성
- 라. 자회사의 조사에 관한 사항
- 마. 전문가의 조력에 관한 사항
- 바. 업무·재산 조사
- 사.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
- 아. 소수주주의 이사에 대한 제소 요청시 소 제기 결정 여부
- 자. 회사 재무제표의 검토
- 차. 중요한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 추정의 변경시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
- 카.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평가
- 타. 내부감시장치의 가동현황에 대한 평가
- 파.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 수령

3. 다른 감사부문에 관한 사항

- 가. 외부감사인 선임 및 변경·해임에 대한 승인

4.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

가. 감사보고서의 작성·제출 및 주주총회에서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

나.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

5. 기타 법령에 정하거나 정관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및 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6. 기타 대표이사가 감사위원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요 사항

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이사회에서 감사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

2.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

제12조(내부회계관리제도)

① 내부회계관리자는 매사업년도마다 감사위원회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실태를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감사위원회는 매사업년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실태 평가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3조(외부감사인의 선임 등)

① 법령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자 할 경우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②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때에는 연속하는 매 3개 사업년도의 외부감사인을 동일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.

③ 감사위원회는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할 때에는 미리 외부감사인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에 관하여 회사와 협의하여야 한다.

④ 회사는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경우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
⑤ 기타 외부감사인의 변경 및 해임 등 감사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.

제14조(의사록)

① 감사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
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

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③ 의사록의 사본을 회의 후 7일 이내에 각 이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
제15조 (전문가의 조력)

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.

제16조 (관계인의 출석)

감사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임직원 및 외부감사인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제17조 (사무국)

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, 사무국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소집통지, 부의안건의 정리 및 배포, 의사록 작성 및 부의안건의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.

제18조 (규정의 개폐)

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부 칙 제1조(시행일)

이 규정은 2001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제1조(시행일)

이 규정은 2004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제1조(시행일)

이 규정은 2006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.